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69

발의연월일: 2024. 11. 5.

발 의 자:윤종오·정혜경·전종덕

임미애 · 황운하 · 한창민

이용우 · 용혜인 · 강득구

박수현 • 박은정 • 정태호

김준혁 · 염태영 · 복기왕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정책 운용 실패와 감세 정책으로 수십조원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연이은 세입결손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지출 구조조정, 기금운 용계획 자체변경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세입결손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확정한 지출계획을 정부가임의로 조정한다면, 헌법이 명시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이 무력화될 수 있음. 또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경우, 국채 추가 발행이나 기금 여유재원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한 대체 재원 확보에도 제약을 받아 재정을 통한 적극적 경기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자의적 대응 대신 국회의 심

의·의결을 거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재정민 주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세입 징수액이 세입예산 대비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①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	
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	
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세입 징수액이 세입예산 대
	비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